KOSHA Guide C-46-2023

(9) 상자 표면에 니트로글리세린이 삼출되거나 흡습액이 유출된 때에는 당해 화약류를 검사하여 지체없이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4.3.2 화약류 취급소

- (1) 취급소는 화약류 사용장소마다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취급소의 위치는 통로 및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갱도, 동력선, 다른 화약취급소, 저장소, 화기 취급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물로부터 안전하고 습기가 적은 장 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취급소는 단층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,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 다.
- (4) 건물은 바닥부위에 철물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와 일광의 직사 및 비와 이슬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5) 경계선 내에서는 흡연 또는 기타의 화기사용을 금하고, 폭발 또는 발화하거나 연소하기 쉬운 것을 적치하지 말아야 한다.
- (6) 취급소 및 부근에서는 약포에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장치하거나 이를 장치 한 약포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.
- (7) 취급소에는 필요한 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8) 취급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1일 사용예정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.
- (9) 취급소에는 화약류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책임자를 정하여 화약류의 수불 및 사용, 잔류수량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.
- (10) 취급소의 내부는 청결하게 정리정돈하고, 내부작업에 필요한 기구 이외의 물건은 두지 않아야 한다.